

법

률

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1년 1월 26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
법무부장관

추 미 애

● **법률 제17905호**

민법 일부개정법률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5조를 삭제한다.

제924조의2 중 “지정이나 징계,”를 “지정이나”로 한다.

제9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”를 “제913조 및 제914조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가목14)를 삭제한다.

제4조(「가사소송법」의 개정)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,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